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강석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617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2월 05일  
발 의 자: 강석주, 김영옥, 유만희,  
이종배, 최호정 의원(5명)  
찬 성 자: 경기문, 김춘곤, 김혜지,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이병윤, 이상욱, 최진혁  
의원(9명)

## 1. 제안이유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 지역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설립하였으나,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폐지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안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붙임1 참고)은 서울시 출연기관<sup>1)</sup>으로 2024년 서울시 예산 기준 10,000,000천원 출연 예정임
  - (재정지출) 본 폐지안에 수반되는 별도 비용 발생 요인 없음
  - (재정수입) 출연기관의 수익(붙임2 참고)은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sup>2)</sup>의 서울시 재정수입에 해당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계분석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 
- 1)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운영
  - 2)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 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1 기관현황

- 기 관 명**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89 포스트타워 5, 12층
- 설 립 일** : 2019. 2. 28.
- 설립근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설립형태**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 설립목적** : 공공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하여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며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사업의 범위** (조례 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이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자문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 그 밖에 시장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이하 “공공성 등”이라 한다)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2023년 예산

### ○ 예산총괄

(단위:천원)

총 예산	인건비*	운영비	정책사업비	예비비
26,971,853	2,071,175	2,234,194	21,433,664	1,232,820

※ 인건비 : 본부 인건비 (소속기관 인건비는 정책사업비에 포함)

※ 총예산 중 인건비는 17,138백만원으로 63.5% 비중 차지

### ○ 세입예산

(단위:천원)

과 목	2023년	2022년	증 감
계	26,971,853 (84.3%)	35,461,125 (98.3%)	△8,489,273
1. 영업수입(자체)	6,486,603 (77.1%)	6,613,088 (96.7%)	△126,485
2. 출연금수입	4,949,124 (100.0%)	18,879,619 (99.5%)	△13,930,495
3. 보조금수입	5,377,429 (66.9%)	3,300,585 (93.0%)	2,076,844
4. 이자 및 기타수입	1,031,591 (7.6%)	175,108 (69.3%)	856,483
5. 잉여금	9,127,105 (100.0%)	6,492,725 (100.0%)	2,634,380

※ 괄호 안의 수치는 집행율임 ('22년: 연도말 기준 / '23년: 9월말 기준)

※ 이자 및 기타수입 집행율 저조 원인 : 10월~11월 보증금 반환수입 7.8억원 유입

### ○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목	2023년	2022년	증 감
계	26,971,853 (64.7%)	35,461,125 (71.8%)	△8,489,272
1. 본부 인건비	2,071,175 (69.0%)	2,746,270 (81.9%)	△675,095
2. 본부 운영비	2,234,194 (61.1%)	2,679,130 (92.5%)	△444,936
3. 정책사업비	21,433,664 (68.4%)	24,117,252 (86.0%)	△2,683,588
○ 종합재가센터 운영	13,151,757 (71.1%)	15,161,076 (89.4%)	△2,009,319
○ 주야간보호시설 운영	1,436,284 (66.7%)	1,648,489 (83.8%)	△212,205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6,182,498 (65.0%)	5,927,396 (85.6%)	255,102
○ 민간서비스기관 지원	139,788 (44.5%)	161,772 (7.1%)	△21,984
○ 서비스 품질관리	151,000 (39.0%)	335,058 (84.1%)	△184,058
○ 돌봄체계 강화 지원기반 구축	191,500 (26.8%)	351,961 (94.3%)	△160,461
○ 긴급돌봄지원단 운영	49,364 (52.4%)	531,500 (21.0%)	△482,136
○ 반환금	131,473 (100.0%)	-	-
4. 성과급	-	1,263,600 (0.0%)	-
5. 예비비	1,232,820 (0.0%)	4,654,873 (0.0%)	△3,422,053

※ 괄호 안의 수치는 집행율임 ('22년: 연도말 기준 / '23년: 9월말 기준)

자료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제

## 6 잉여금의 처리

▶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함이 기본원칙임

-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자본금)에 편입하거나 또는 차입금변제에 우선활용**
- (재무회계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 \*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
  - (출연기관)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
  - (출자기관) 정관 등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주주 배당 등 실시 가능
- (재무회계 결산결과에 따른 손실의 처리)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손실 이월
- (잉여금의 개념)

$$\begin{array}{rcccl}
 \boxed{\text{수납된 세입액}} & - & \boxed{\text{지출된 세출액}} & = & \boxed{\text{결산상 잉여금(세계잉여금)}} \\
 & & & & \swarrow \\
 \boxed{\text{결산상 잉여금}} & - & \boxed{\text{다음연도 이월액,}} & = & \boxed{\text{순세계잉여금}} \\
 & & \boxed{\text{미지급이월액}} & & 
 \end{array}$$

결산상 잉여금(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당해 사업연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금액, 다음연도 이월액 및 미지급이월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되지는 않았으나, 다음연도 이후 지출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는 항목	당해 사업연도 말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및 미지급이월액을 제외한 금액

- (잉여금을 반영한 출연금의 교부 및 정산)
  - (설립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을 고려하여 출연금 교부
  - (출연기관) 목적성 사업 출연금은 사업예산 잔액 및 이자수입을 고려하여 차년도 목적사업 예산에 반영

<지방보조금과 출연금의 비교>

구 분	지방보조금	출연금
개념	지자체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자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일반법상 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개별법상 근거	-	조례상 지원 근거 반드시 필요 (지방재정법 제18조 근거)
용도지정	사용 용도 지정 필수	- 일반출연금(미지정, 기관의 재산) - 목적출연금(지정)
집행잔액 처리	사업종료 시 사후정산, 국고반환	정산불필요, 지자체에 결산보고
이자수입 처리	국고 반환	출연기관에 귀속

자료 : 2024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P.18~19 발췌